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94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조인철 · 조계원 · 장종태
주철현 · 이개호 · 이건태
정준호 · 박수현 · 박용갑
양부남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SK텔레콤의 침해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이나 사후조치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 현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2024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KT 6.4%, LGU+6.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

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고위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제47조의7제2항 및 제47조의8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4.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제47조의7의 제목 중 “특례”를 “차등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8(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6조제1항제6호의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
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3. (생략)

③ ~ ⑦ (생략)

⑧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
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
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⑨ (생략)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이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⑨ (현행과 같음)

⑩ -----

-----.

-----.

1. ~ 3. (생략)

<신설>

⑪·⑫ (생략)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생략)

<신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⑪·⑫ (현행과 같음)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제2항에-----
-----.

④ -----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항 및 제2항에-----

·.

제47조의8(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4. (생략)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u>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u> 6의6. ~ 12. (생략) ② ~ ④ (생략)	<u>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u> 제76조(과태료) ① ----- ----- ----- ----- -----. 1. ~ 6의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의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